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중전	혁신법
학생인건비 계상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타 재원으로 발생한 소득 고려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필요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만 고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불필요*
	〈신 설〉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대학재정지원사업(BK21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단기 근로소득, 창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 위 사항으로 인해 계상률을 낮게 산정할 수 없음
연구참여 협약 체결	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 양자 간 협약	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계정책임자) ↔ 기관장 3자 간 협약
	협약체결 단위 -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통합관리기관 외) 월 단위	협약체결 단위 -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통합관리기관 외) 학기 또는 학년 단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신 설〉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필요 ※ 학연프로그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출연연 및 특정연 포함
박사후 연구자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근로계약 체결 후 인건비 지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불필요 사항은 학생연구자의 행정 불편 경감을 위한 것으로,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장려하는 것이 아님. 기관 자체 규정에서 직장인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아울러, 전일제 학생은 반드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연구 참여가 가능하나, 직장인 학생은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 참여 가능. 특히,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장인 학생의 학생인건비 지급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직장인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는 기존 전일제 학생을 위한 학생인건비 외에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하길 권고함